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가단50732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강영태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23,128,017원 및 그 중 13,657,261원에 대하여는 2021. 1. 21.부터, 9,470,661원에 대하여는 2021. 2. 17.부터 각 2021. 5. 3.까지는 연 10%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은 24,483,65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4,483,6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A는 2018. 6. 5. C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의 농식품기업운전자금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을 받고, 2020. 4. 21. D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로부터 위 제1대출과 관련하여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3. 6. 2.의, 제2대출과 관련하여 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25. 4. 21.의 각 신용보증을 받았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각 신용보증에 있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 2018. 2. 1. 이후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당하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하거나,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액을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A는 자금 사정의 악화로 2020. 9. 2. 위 각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였고, 2020. 10. 6.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21. 1. 21. 제1대출 채권자인 C은행에게 13,821,111원, 2021. 2. 17. 제2대출 채권자인 D은행에게 9,657,551원 합계 23,478,6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아래 표와 기재와 같이 제1, 2 대출 대위변제금의 일부를

회수하였고[총잔존대위변제금 : 23,127,922원(= 총대위변제금 23,478,662원 - 총일부회수금 350,740원), 확정지연손해금 95원이 발생하였다.

대출	회수일	회수금	일수	손해금율	지연손해금
1	2021. 1. 21.	163,850	1	연 10%	44원
2	2021. 2. 17.	186,890	1	연 10%	51원
합 계		350,740	합 계		95원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3,128,017원(위 23,127,922원 + 총확정지연손해금 95원) 및 그 중 13,657,261원(제1대출 잔존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2021. 1. 21.부터, 9,470,661원(제2보증잔존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2021.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1. 5. 3.까지는 위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주식회사 A는 2020. 7. 10.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342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A,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 B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20. 3. 2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위 각 신용보증약정은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 주식회사 A는 자금 사정 등으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인 2020. 10. 6.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됨으로써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사전구상금채권 및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및 피고 B의 악의

피고 주식회사 A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의 사해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다(피고 B는 자신의 부친이 고모부인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을 뿐,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축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78,000,000원이고, 2020. 7. 30.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19,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보전채권인 23,128,017원과 그 중 13,657,261원에 대한 2021. 1. 2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9. 2.까지의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41,885원, 9,470,661원에 대한 2021. 2. 17.부터 위 2021. 9. 2.까지의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513,750원 합계 24,483,652원(= 위 23,128,017원 + 841,885원 + 513,750원) 범위 내에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24,483,65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24,483,6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경훈

별지

부 동 산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이천시 F G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이천시 H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49.3㎡

2층 148.74㎡

3층 148.74㎡

4층 148.7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I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64.0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이천시 F 대 450㎡

대지권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450분의 56.25 끝.

